

제268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11월 28일
전문위원 정 우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19 - 83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19년 11월 5일
- 라.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2.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의 참여(안 제4조)
 - 주민은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 가능
- 나.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안 제8조)
 -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 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 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안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 인 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구 성: 당연직과 강서구의원, 도시계획·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 도시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10. 4. ~ 10. 24.)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수용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1) [안 제1~3조] 목적 및 정의
- 2) [안 제4~5조] 주민의 참여과 구청장의 책무
- 3) [안 제6~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안 제9조] 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
- 6) [안 제10~16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
- 7) [안 제17~18조] 교육 및 홍보

다. 종합 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에게 더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이며,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 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⑥ 삭제 <2015. 12. 29.>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3. 사업시행자
-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